자금운용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자금운용계획 수립시기 등을 변경하고, 자금운용기준서 주요내용을 자금운용규정시행세칙에 반영 후 자금운용기준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효율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 시기를 매 전년도말에서 매 계획연도 2월말로 변경함 (안 제5조)

나. 금융기관 거래한도와 별도로 운용 가능한 자금의 종류를 정함 (안 제6조)

다. 별도로 정하는 지출항목은 영업부서에서 직접 CMS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라. 자금운용기준서의 용어정의, 자금운용담당자 행위준칙, 적정 단기자금 규모,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 투자가능상품, 기준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세칙에 반영하고 자금운용기준서를 폐지함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

○ 담당자(이메일) : 최문섭(mschoi@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348

○ 팩스번호 : 051-955-5307

4. 예고기간 단축사유

실무운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자금운용규정시행세칙과 자금운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속한 시행세칙 개정 필요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준비금배율"이란 기말 여유자금을 기말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배수를 말한다. 2. "Shortfall Risk"란 전체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의 누적 투자수익률이 일정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련법령, 제규정, 시장관행의 순서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4조)
<신 설>	제4조(자금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① 모든 자금운용담당자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자금운용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자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 및 외부로부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향응 수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금운용담당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했을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자금운용담당자의 일반적인 행위준칙을 명시함 (자금운용기준서 제31조)
제3조(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규정 제6조에 의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은 매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 ① 자금운용계획은 매 계획연도 2월말까지 수립한다.	자금운용계획 수립시기를 매 계획연도 2월말로 변경
<신 설>	② 자금수급계획은 자금수지와 유동성 위험을 고려한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유동성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단기자금 규모 설정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12조, 제13조)
<신 설>	③ 목표수익률은 목표로 하는 책임준비금배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목표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목표수익률 설정기준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14조)
<신 설>	④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를 사용하여 별표1과 같이 통제한다.	허용위험한도 설정기준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15조)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 설>	⑤ 자산배분계획은 자산배분(안)을 설정하고,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여 수립한다.	전략적 자산배분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17조)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정한다.	전술적 자산배분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18조)
② 영업부서장은 건별 10억 원 이상의 자금수급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전에 소관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으로 이기>	자금청구 관련 조항으로 이기
<신 설>	**제6조(거래한도)** 규정 제9조의 금융기관별 거래한도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금융기관별 거래한도와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현금성자금 2. 위탁운용자금 3. 거래금융기관 재평가에 따른 거래한도 초과자금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사장이 정하는 자금	거래한도에 대한 별도 지침 적용과 거래한도와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신 설>	**제7조(운용가능상품)** 규정 제10조의2와 제13조에 따른 자산군별 운용가능상품은 별표2와 같다.	운용가능 상품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16조)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8조(기준수익률)** 규정 제29조의 기준수익률은 별표3과 같이 설정한다.	기준수익률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제27조)
제6조(자금지출요청 및 자금청구) ①~⑤ (생 략) <제3조제2항에서 이기>	**제11조(자금지출요청 및 자금청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영업부서장은 건별 10억 원 이상의 자금수급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전에 소관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금청구 관련 조항으로 이기
제7조 (자금의 지출 및 이체) ① 공사의 모든 지출은 소관부서에서 CMS를 통해 정당한 영수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업부서장이 직접 지출 할 수 있다. 1.~2. (생 략) 3.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CMS 지출 ② (생 략)	**제12조 (자금의 지출 및 이체)** ① ----------. 1.~2. (현행과 같음) 3. ---------- 일정금액 이하 또는 지출항목의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자금운용기준서를 폐지한다.	영업부서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함

현 행

<신 설>

허용위험한도

자산군		허용위험한도	내 용
단기 자금		Shortfall Risk ≦ 0.1%	단기자금의 누적수익률이 0%이하가 될 가능성을 0.1%이하로 설정함
중장기 자금	향후 1년	Shortfall Risk ≦ 1%	향후 1년간 누적수익률이 0%이하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설정함
	향후 5년	Shortfall Risk(CPI) ≦ 5%	향후 5년간 누적수익률이 누적 물가상승률 이하가 될 가능성을 5% 이하로 설정함
전체 자금	향후 1년	AR Shortfall Risk (책임준비금 배율 위험) ≦ 10%	1년 후 책임준비금 배율이 임계값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10%이하로 설정함

* 책임준비금 배율의 임계값은 "제14조제3항의 1년 전체 자금수지위험 × 12.5 / 1년 후 책임준비금 전망치"의 75% 수준으로 함

<신 설>

투자가능상품

자산군		투자가능 상품	운용 방법
단기 자금	확정 금리형	요구불예금, MMDA, 정기예금, CD 등	내부 운용
	실적 배당형	MMF, MMT 등	
중장기 자금	확정 금리형	정기예금, CD 등	
	실적 배당형	국내·해외 채권(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국내·해외 주식, 수익증권(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대체투자(부동산펀드, SOC 사업 등) 등	위탁 운용

개정안

별표1] (제4조 관련)

허용위험한도

자산군		허용위험한도	내 용
단기 자금		Shortfall Risk ≦ 0.1%	단기자금의 누적수익률이 0%이하가 될 가능성을 0.1%이하로 설정함
중장기 자금	향후 1년	Shortfall Risk ≦ 1%	향후 1년간 누적수익률이 0%이하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설정함
	향후 5년	Shortfall Risk(CPI) ≦ 5%	향후 5년간 누적수익률이 누적 물가상승률 이하가 될 가능성을 5% 이하로 설정함
전체 자금	향후 1년	AR Shortfall Risk (책임준비금 배율 위험) ≦ 10%	1년 후 책임준비금 배율이 임계값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10%이하로 설정함

* 책임준비금 배율의 임계값은 "1년 전체 자금수지위험 × 12.5 / 1년 후 책임준비금 전망치"의 75% 수준으로 함

[별표2] (제5조 관련)

운용가능상품

자산군		투자가능 상품	운용 방법
단기 자금	확정 금리형	요구불예금, MMDA, 정기예금, CD 등	내부 운용
	실적 배당형	MMF, MMT 등	
중장기 자금	확정 금리형	정기예금, CD, 중금채 등	
	실적 배당형	국내·해외 채권(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국내·해외 주식, 수익증권(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대체투자(부동산펀드, SOC 사업 등) 등	위탁 운용

개정사유

자산군별 허용위험한도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별표3)

자산군별 운용가능상품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별표4)

현 행

<신 설>

자산군별 기준수익률

자산군			기준수익률
단기 자금	현금성	3개월 이하	한국은행 기업MMDA 수익률
	유동성	3개월 초과, ~1년 이하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
중장기 자금	실적 배당형	확정금리형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
		국내채권	민간평가사 종합채권지수
		국내주식	KOSPI 총수익지수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주1 (hedged to KRW)
		해외채권	Barclays Global Aggregate주2 Index(hedged to KRW)
		대체투자	MAX {Hurdle Rate주3 5%, 실질 GDP 성장률}

(신 설)

(신 설)
주1) MSCI AC World Index : 모건스탠리社(MSCI)가 공시하는 선진국 주가지수
주2)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 : Barclays社가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등급 해외 채권지수
주3) Hurdle Rate : 최저기대 투자수익률

개정안

[별표3] (제6조 관련)

자산군별 기준수익률

자산군			기준수익률
단기 자금	현금성	3개월 이하	한국은행 기업MMDA 수익률
	유동성	3개월 초과, ~1년 이하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 (6M~1Y)
중장기 자금	실적 배당형	확정금리형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 (1Y~2Y)
		국내채권	민간평가사 종합채권지수주1
		국내주식	KOSPI 총수익지수주2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주3 (hedged to KRW)
		해외채권	Barclays Global Aggregate주4 Index(hedged to KRW)
		대체투자	MAX {Hurdle Rate주5 5%, 실질 GDP 성장률}

주1) 잔존만기 3개월 이상 5년 미만, A-등급 이상 채권지수 평균
주2)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KOSPI 총수익지수
주3) MSCI AC World Index : 모건스탠리社(MSCI)가 공시하는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지수
주4)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 : Bloomberg社가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등급 해외 채권지수
주5) Hurdle Rate : 최저기대 투자수익률

개정사유

자산군별 기준수익률 반영 (자금운용기준서 별표6)